

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5 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7. 11. 26 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7. 12. 04 (화) 제14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: 김장래)

- 가.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취득 1건으로,
 - “노동계곡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지” 용평면 노동리 71번지 외 5필지 7,891㎡ 24,969천원 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공유재산관

리계획 2차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한 공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세부적으로 보면,

-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사업장은 노동계곡일원으로 군에서 도유지(38,076㎡)와 일부 사유지를 교환·매입하여 종합캠핑장으로 조성하므로써, 연간 37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고원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캠핑시설,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,
- 매입하고자 하는 6필지는 이승복 생가터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지로서, 위 부지를 중심으로 위·아래 제1야영장(노동리 86번지) 및 제2야영장(노동리 64, 65번지)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종합적인 캠핑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단, 부지 및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조성 위주의 1차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캠핑시설 등 숙박시설 위주의 2차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, 동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시기 등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예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질의요지	답변요지
없	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1부. 끝.

붙임)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2. 주요내용

-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취득 1건으로,
 - “노동계곡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” 용평면 노동리 71번지외 5필지 7,891㎡ 24,969천원임

3. 첨부자료

- 가.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4차 변경계획서 1부.
- 나. 관계법령 발췌 1부.

관계법령 발췌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